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96호

남대문로5가 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01호(2010.3.18.) 『202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』으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남대문로5가 84-1번지 일원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7조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5월 29일
서울특별시 장

I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
1. 정비구역의 지정

1) 정비사업의 명칭: 남대문로5가 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2) 정비구역 지정 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남대문로5가 1구역	중구 남대문로5가 84-1번지 일원	820.5	-

■ 결정 사유서

구역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남대문로5가 1구역	• 위치: 종로구 남대문로5가 84-1번지 일원 • 면적: 820.5㎡	• 2020 서울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심부 상강적 중심지역으로 개발방향 수립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남대문로5가 1구역을 신규 지정코자 함

3) 정비구역을 분할,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: 해당없음

4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용도	건폐율(%)	용적률(%) (기준/허용/상한)	높이(m)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신설	남대문로5가 1구역	820.5	획지	820.5	남대문로5가 84-1번지 일원	업무시설	60이하	600/660/842이하	100이하	

2. 정비계획의 결정

1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조서

가) 용도지역 결정조서

구 분	면 적(㎡)	비율(%)	비 고
합 계	820.5	100.0	
일반상업지역	820.5	100.0	

나) 용도지구 결정조서: 해당없음

2) 토지이용계획: 신설

구 분	면 적 (㎡)	비 율 (%)	비 고
합계	820.5	100.0	
획지(대지)	820.5	100.0	

※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)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

가)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

(1) 도로: 변경없음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		
기정	광로	2	4	50	주간선 도로	1,500	세종로광장	서울역앞	일반 도로	-	1962.12.08	건설부고시 제177호
기정	소로	1		10	집산 도로	167	남대문로5가 260도	남대문로5가 84-15도	일반 도로	-	2011.12.01	서울시교시 제2011-361호

※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근의 주요 교통시설(도로)임

※ 남대문로5가 1구역과 면한 도로 외 사항은 생략

나)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(부담) 계획: 신설

(1) 정비기반시설 등의 부담 계획

구분	시행 면적 (㎡)	대지 면적 (㎡)	정비 기반시설 면적 (㎡)	계획기반 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(㎡)	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	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(㎡)	순부담 면적 (㎡)	순부담률 (%)	비고
신 설	820.5	820.5	-	-	42.7	95.74	95.74	11.66	

※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은 토지지분 면적과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을 합한 면적임

※ 대상지 내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없으므로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는 유상매입 처리

(2) 기부채납 시설 계획

구분	계획 지침	계획 내용
신설	- 순부담률: 11.66% 이상 - 공공임대 업무시설	- 기부채납 공공시설 면적: 95.74㎡ -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: 53.93㎡ - 토지면적(지분): 41.81㎡ -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

(3)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(관리청) 지정조서

구분	위치	층	연면적	비고(관리청)
공공임대 업무시설	중구 남대문로5가 84-1번지 일원	지하3층 지상2층	433.26㎡	서울특별시 (장애인복지과)

- ※ 공공임대 업무시설은 토지지분 면적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로 기부채납하고, 관리청(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)에서 운영 및 관리함
 ※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·층고·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
 ※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

4)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5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: 해당사항 없음

6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구분		위치	정비개량 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후	
신설	남대문로5가 1구역	820.5	획지	820.5	남대문로5가 84-1번지 일원	9	-	-	9	-	

7) 건축물에 관한 계획

구분	구 역 구 분		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(m)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신설	남대문로5가 1구역	820.5	획지	820.5	남대문로5가 84-1번지 일원	업무시설	60 이하	842 이하	100 이하	-
용도에 관한 계획	신설	- 가로활성화용도: 저층부(건축물 1층) -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·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·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일반음식점 ·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·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※ 1층 바닥면적 합계의 2/3 이상 설치								
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	신설	- 용적률: ①+②+③ = 842% 이하 ① 기준용적률: 600% ② 허용용적률: 660% - 허용용적률 인센티브: 60% 적용(※ 2030 기본계획 항목 적용)								
		구분	인센티브 항목		요건		산정방식	정량		
		계획 유도	친환경 개발	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	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 15% 추가 설치 시(신재생에너지 중 재생열 비율 10%이상 도입시)		정량 부여	20%		
				개발용 건축자재	개발용 건축자재 사용 시		정량 부여	20%		
			안전·방재	방재관련시설	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		정량 부여	20%		

		③ 상한용적률: 842% 이하 - 상한용적률 인센티브: 182% 적용				
		구분	인센티브 산식	적용내용	적용량	
		공공시설 등 부지제공	허용용적률×[(1.3×α토지)+(1.2×α건축물)]	660%×[(1.3×41.81)/(820.5-41.81)+(1.2×53.94)/(820.5-41.81)]	100.92%	
		공개공지 초과조성	허용용적률×(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면적/대지면적)×½	660%×{(86.72-82.05)/820.5}×½	1.88%	
		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	허용용적률×1.0×녹색건축물 인증완화 비율	660%×1.0×6%(최우수 등급)	39.6%	
		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초과등급 인증	허용용적률×1.0×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완화 비율	660%×1.0×6%(1++등급)	39.6%	
		※ 「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」 개정('25.1.)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폐지됨에 따라 ZEB도입 또는 타 항목 인증 등급 상향 등으로 변경 필요				
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	신설	• 최고높이: ① + ② = 100.5m → 100m 이하 적용				
		구분	적용내용		적용량	
		① 기준높이	90m		90m	
		②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원화높이	기준높이 × (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/당지의 대지면적) 이내 = 90 × (95.74㎡ ÷ 820.5㎡) = 10.50m		10.5m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		• 해당없음				
공공주택 및 주거비용 완화에 대한 계획		• 해당없음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• 건축한계선: 세종대로변 3m				
대지 내 공간에 관한 계획	전면공지	• 건축한계선 후퇴구간 전면공지 조성				
	공개공지	• 관련법령 및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세종대로변 조성(최소폭 4.5m 이상) - 조성면적: 86.72㎡ ※ 결정도면 참조				
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		• 해당없음				

8)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

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도시정비법 재개발사업	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	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5조에 해당하는 자	-	-

9)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

가)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

(1) 추정지분율: 100%

구분		금액(천원)	비고
종후 토지 및 건물평가금액 (총 사업비)	계	112,951,000	
	분양예정지 대지평가액	50,804,000	
	신축건물시설 평가액	62,147,000	
대지조성비		-	
총 종전 토지 및 건물평가액		41,503,000	
총대지평가차액		9,301,000	
비용부담액(사업시행자 부담 원칙)		62,147,000	

(2) 개별분양대상자 투자금액(권리가액 상당액)

- 임의 산정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자산(토지 또는 건축물) : 41,503,000(가정)
- 개별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비율 = $41,503,000 / 41,503,000 \approx 100\%$
- 개별 대지평가차액 = $9,301,000 \times 100\% \approx 9,301,000$
-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(권리가액 상당액) = $41,503,000 + 9,301,000$
- 개별분양대상자 투자금액(권리가액 상당액) = $41,503,000 + 9,301,000 = 50,804,000$
- 지분율 = $50,804,000 / 112,951,000 \approx 44.98\%$

(3) 추정 수익률

- 추정수익률(사업시행에 따른 개별 종전자산의 수익률) : 22.41%
- 개별 권리가액 상당액 / 개별 종전자산(토지 또는 건축물) $\times 100\%$

(4) 추정 분담금 산출

- 추정분담금(개략적인 개별 분담금) 산출방식
 -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-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
- ※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 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 개별 분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(사업시행자 지급), 그 반대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(사업시행자 징수)

구분		토지등소유자 분양가(추산액) (3.3㎡당,천원)	토지등 소유자 분양가 (추산액, 천원)	개별분양대상자 투자금액 (권리가액 상당액, 천원)	개별 분담금 (천원)	비고
업무시설	지상3층~20층	68,560	101,671,000	50,804,000	62,147,000	개별분담금 사업자부담
근린 생활시설	지상1층 (전용178.77㎡)	110,000	5,948,000			
	지하1층 (전용333.84㎡)	38,500	3,889,000			
	지하2층 (전용268.87㎡)	17,742	1,443,000			

10)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**11)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: 해당사항 없음****12)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: 해당사항 없음****13) 세입자 주거대책****가) 세입자 주거대책: 해당사항 없음****나) 상가 세입자 대책**

- (1) 현재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와는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보상대책 마련 후 퇴거
- (2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62조, 제65조에 따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

14) 환경성 검토 결과: 해당사항 없음**15)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**

구분	계획내용	비고
도시경관	• '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' 도시경관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• 주요 도로변에서이 조망분석으로 주변 시가지 및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유도	

환경보전	• 대지내 공지는 조경식재공간으로 조성하고 불투수 면적을 최소화 •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생태면적을 운영지침(2023.10.30.)에 제시된 건축 유형에 따른 생태면적률 기준인 20%(공동주택(다세대주택 제외) 이외의 건축물 기준) 이상 확보 • 조경계획 수립시 다층구조의 식생대를 조성하여 조류를 유인하고, 소규모 비오터를 조성하여 새로운 녹지축을 형성 • 단지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장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며,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• 조경녹지 및 가로변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정화능력 및 적응력이 우수한 환경정화수종을 우선 식재토록 계획 • 조경식재, 가로수식재 등을 통해 수목에 의한 흡음 및 소음원에 대한 시각적차폐 유도	
재난방지	• 사업대상지내 보행로 및 공원은 우수침투가 가능한 투수성 바닥포장을 사용하고,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이용 • 지구내 자연지반을 최대한화하고 표면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침투율이 높은 자연성포장 및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• 시설물 및 공원·조경녹지 지하에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여 평상시 빗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	

16)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: 해당사항 없음

17)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

가) 교통처리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차량출입 불허구간	• 세종대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	-
주차 출입구	• 세종대로2길변 주차출입구 설치	결정도서 참조

18)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

사업시기 및 예방시설	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	비고
착공 전	• 펜스 설치 및 유지·관리 • 방범용 CCTV 설치 운영	
착공 ~ 공사 완료	• 건설산업기본법, 건설기술진흥법, 건축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시공 •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	
범죄예방시설	•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에 설치 •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개 계획 수립(자연 감시 고려)	

19)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: 해당사항 없음

20) 구역 내 옛길, 옛 물길,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·문화 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: 해당사항 없음

II.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

1. 지구단위구역에 관한 결정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비 고
신설	㉔	남대문로5가 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	중구 남대문로5가 84-1번지 일원	820.5	-

나. 용도지역 결정 조서: 변경없음

구분	면적(㎡)	비율(%)	비 고
합 계	820.5	100.0	
일반상업지역	820.5	100.0	

다. 용도지구 결정 조서: 해당없음

2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

가. 교통시설(도로): 변경없음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		
기정	광로	2	4	50	주간선 도로	1,500	세종로광장	서울역앞	일반 도로	-	1962.12.08	건설부고시 제177호
기정	소로	1		10	집산 도로	167	남대문로5가 260도	남대문로5가 84-15도	일반 도로	-	2011.12.01.	서울시고시 제2011-361호

※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근의 주요 교통시설(도로)임

※ 남대문로5가 1구역과 면한 도로 외 사항은 생략

3. 공공기여계획에 관한 결정

가. 건축물 기부채납(공공임대 업무시설)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 지침	계획 내용
신설	- 순부담률: 11.66% 이상 - 공공임대 업무시설	- 기부채납 공공시설 면적: 95.74㎡ -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: 53.93㎡ - 토지면적(지분): 41.81㎡ -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

나.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(관리청) 지정 조서

구분	위치	층	연면적	비고(관리청)
공공임대 업무시설	중구 남대문로5가 84-1번지 일원	지하3층 지상2층	433,26㎡	서울특별시 (장애인복지과)

※ 공공임대 업무시설은 토지지분 면적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로 기부채납하고, 관리청(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)에서 운영 및 관리함

※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·층고·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

※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

4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가.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

구분	가구 또는 획지 구분	명칭	면적(㎡)	위치	주용도	건폐율(%)	용적률(%) (기준/허용/상한)	높이(m)	비고
신설	남대문로5가 1구역	획지	820.5	남대문로5가 84-1번지 일원	업무시설	60이하	600/660/842이하	100이하	

나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조서

1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

(1) 허용용도

구분	계획내용	비고
신설	남대문로5가 1구역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-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-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-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, 공공업무시설	허용용도외의 용도는 불허

※ 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 도심부 토지이용 및 지역별 주용도 반영

(2) 지정용도

구분	계획내용	비고
신설	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일반음식점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-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	지상 1층

※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는 1층 바닥면적 합계의 2/3 이상 설치

■ 결정 사유서

위치	결정내용	결정사유
남대문로5가 1구역	- 지정용도 신설 - 저층부(1층)의 지정용도 신설	송래문~대상자·서울역 일대의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지정용도 도입

2) 건축물 건폐율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신설	남대문로5가 1구역	60% 이하

3)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신설	남대문로5가 1구역 - 기준용적률: 600% - 허용용적률: 660% - 상한용적률: 842% 이하	

(1)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

항 목		적용기준	적용량	비고
친환경개발	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	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 15% 추가 설치 시 (신재생에너지 중 재생열 비율 10%이상 도입시)	20.0%	60.0% 적용
	재활용 건축자재	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시	20.0%	
안전·방재	방재관련시설	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	20.0%	

(2)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

항 목	인센티브 산식	적용내용	적용량	비고
공공시설 등 부지제공	$\text{허용용적률} \times [(1.3 \times \alpha \text{토지}) + (1.2 \times \alpha \text{건축물})]$	$660\% \times [(1.3 \times 41.81 / (820.5 - 41.81)) + (1.2 \times 53.94 / (820.5 - 41.81))]$	100.92%	182.0% 적용
공개공지 초과조성	$\text{허용용적률} \times (\text{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면적} / \text{대지면적}) \times 1/2$	$660\% \times \{(86.72 - 82.05) / 820.5\} \times 1/2$	1.88%	
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	허용용적률 $\times 1.0 \times$ 녹색건축물 인증 완화 비율	$660\% \times 1.0 \times 6\%$ (최우수 등급)	39.6%	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초과등급 인증	허용용적률 $\times 1.0 \times$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완화 비율	$660\% \times 1.0 \times 6\%$ (1++등급)	39.6%	

※ 「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」 개정(‘25.1.)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폐지됨에 따라 ZEB도입 또는 타 항목 인증 등급 상향 등으로 변경 필요

4)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

구분		계획내용	비고
신설	남대문로5가 1구역	100m 이하	

(1) 높이 완화 사항

항 목	계획내용	적용량	비고
기준높이	90m	90m	100m 이하 적용
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	$\text{기준높이} \times (\text{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} / \text{당초의 대지면적}) \text{ 이내}$ $= 90 \times (95.74 \text{㎡} \div 820.5 \text{㎡}) = 10.50 \text{m}$	10.5m	

다. 건축물의 배치·형태에 및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**1)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**

구분		계획내용	비고
신설	남대문로5가 1구역	• 건축한계선: 세종대로변 3m	

2)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전면공지	• 건축한계선 후퇴구간 전면공지 조성	
공개공지	• 관련법령 및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세종대로변 조성(최소폭 4.5m 이상) - 공개공지 계획면적: 86.72㎡	

5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**가.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**

구분		계획내용	비고
신설	차량출입 불허구간	• 세종대로변	결정도서 참고
	주차 출입구	• 세종대로2길변	

Ⅲ. 2024년 제17차('24.12.18.)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구분	심의 결과	심의 의견
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	수정 가결	• 공공기여 시설은 운영 시 차질이 없도록 도입 용도 및 운영계획에 대해 면밀 검토 • 건축심의회 피난계단 위치 등 설치 계획, 기계식주차장 대기 공간의 적정성 및 공개공지 효용성 제고방안 등 검토

Ⅳ. 관련도면 : 불임참조**Ⅴ. 열람장소**

- ※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(☎02-2133-4647),
중구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72)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-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[남대문로5가 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]

■ 정비구역 결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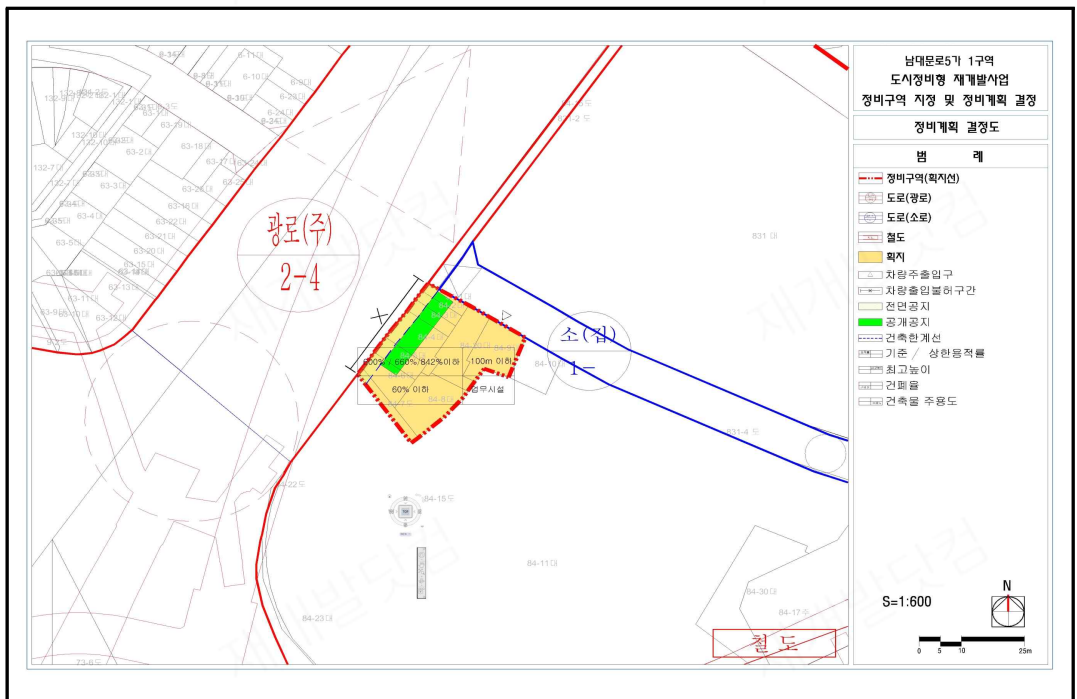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

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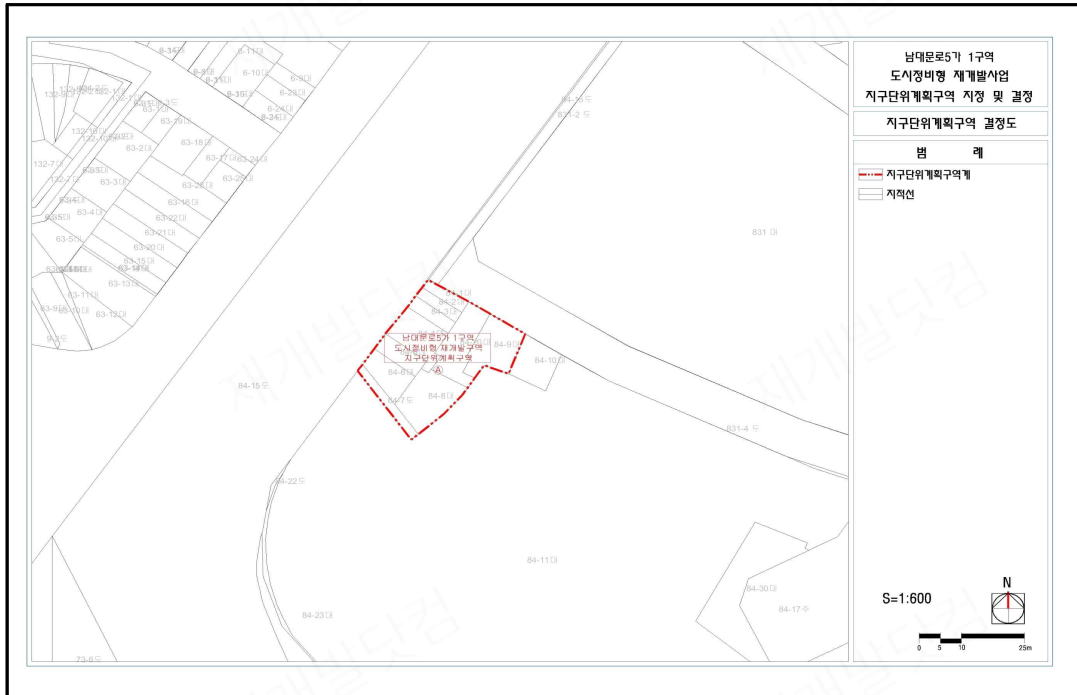


■ 정비계획 종합결정도



[남대문로5가 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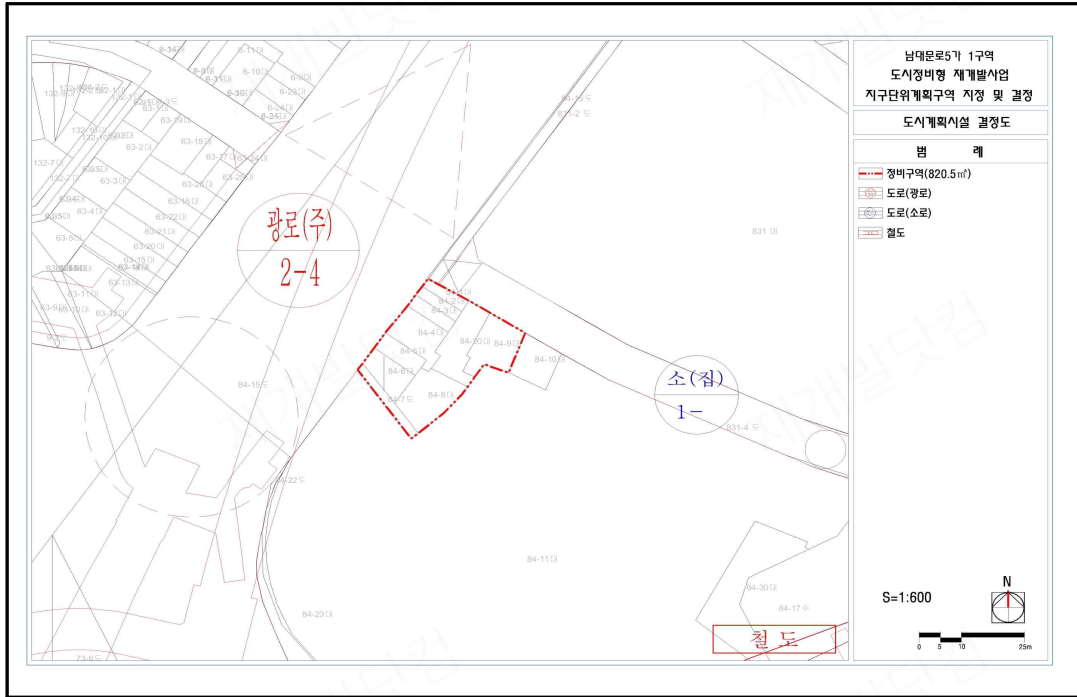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



■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

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



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종합결정도

